

제규정 제·개정 사전예고

1. 규정 명칭:

개정기준	· 경영지도수수료 등 운용기준 ·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선정평가 업무처리기준 · 컨설팅 운용기준
------	--

2. 제·개정 이유

- 경영지도수수료 우대 지원 대상 확대
- 「경영혁신형 중소기업(Main-Biz) 제도 운영규정」 개정고시 내용 반영
- 대고객 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반 마련

3. 주요 제·개정 내용

- 컨설팅수수료 우대 지원 대상 변경 및 확대에 따른 관련 기준 정비
-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연장평가 업무 위탁 관련 내용 반영
- ‘개인(신용)정보 수집·이용·제공·조회 동의서[컨설팅용]’의 수집·이용·조회 항목 추가

4. 의견제출

사전예고된 제규정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5일까지(도착일 기준)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신용보증기금 기업컨설팅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- ① 사전예고된 사항에 대한 의견 :
- ② 제출자 관련 사항 : 성명, 주소, 전화번호, e-mail 주소

<보내실 곳>

담당자	전 화	팩 스	e-mail 주소	주 소
설재경	053-430-4683	0505-071-4539	smilecs@kodit.co.kr	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 신용보증기금 11층